제25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
제2차 본 회 의 (2021.3.10.)

조 례 안
심사 보고서

거 창 군 의 회
의회운영위원회]

목 차

1 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..... 1

의안번호 제2021 - 20호

거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1. 2. 23, 거창군수

나. 발 의 자 : 심재수외 10명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1. 3. 8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 발생 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코자 함

나. 재무·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해 검사위원 수당 증액 필요

나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3조에 따라 선임된 결산검사위원 결원발생 시 선임방법 신설(안 제3조제6항)

나. 결산검사위원 수당 증액(별표)

3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 제3항

○ 「지방자치법」 시행령 제83조 제1항

○ 「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·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」 제7조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신순화)

○ 본 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검사위원 결원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함이므로,

– 『지방자치법』 시행령 제83조제1항 : 법제134조에 따른 검사위원의 수는 시·도의 경우에는 5명이상 10명이하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명이상 5명이하로 하되, 그 수·선임방법·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로 대처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결산검사의 차질없는 수행을 도모하고 있고,

○ 결산검사위원의 위원수당 증액은 재무·회계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.

○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,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회의록 참조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